

1. 骨材採取法施行令

大統領令 第13,706號 1992. 8. 8

제 1조 (목적) 이 영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골재”라 함은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로서 수중골재와 하상골재를 말한다.
2. “수중골재”라 함은 수중장비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수면 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3. “하상골재”라 함은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중 제2호외의 것을 말한다.
4. “바다골재”라 함은 바다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5. “산림골재”라 함은 산림법에 의한 산림지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6. “육성골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골재를 말한다.

② 제1항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골재자원의 조사)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매 연도 별로 전국의 골재자원에 대한 지역별·종류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력자원부장관은 다음 지역의 골재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골재공급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2. 골재자원의 개발에 적합한 입지를 갖춘 지역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골재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지역
3. 조사기간
4. 조사하는 기관

③ 동력자원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은 골재자원의 기초조사 및 실지조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 (조사업무의 대행)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골재자원의 기초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자원연구소

② 건설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에 관한 실지조사업무를 다음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에 의한 국토개발연구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 5 조 (골재채취예정지) ① 시·도지사는 매년 1월31일까지 일정지역을 정하여 당해 연도의 골재채취예정지(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를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의한 칙령하천 또는 연안구역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면적 및 골재의 부존량
 2. 채취할 수 있는 골재의 종류 및 수량
 3. 채취기간
 4. 골재채취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사업에 필요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등 시·도지사가 골재의 채취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 (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골재의 공급량 및 공급시기
2. 골재의 공급지역

제 7 조 (사업계획 통보)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중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사업계획 및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을 건설부장관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계획 및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간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
2. 사업별 골재의 수요 및 산출근거
3. 분기별 골재수급계획
4. 골재의 종류별 채취계획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피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6. 비축기지의 운용
7. 골재운송대책
8. 기타 골재의 수급에 필요한 사항

제 9 조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법 제7조제1항에서 “기타 골재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의 조치를 말한다.

1. 골재유통구조의 개선
2. 골재운송대책의 강구

제 10 조 (집중개발 또는 비축대상골재)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골재”라 함은 다음의 골재를 말한다.

1.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골재

2. 계속적으로 수요가 예측되는 골재

3. 골재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공급이 필요한 골재

제11조 (골재의 집중개발) ① 건설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 집중개발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재의 집중개발 계획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집중개발의 목적
2. 지역별 채취계획량
3. 골재종류별 채취계획량

②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 집중개발 명령을 받은 골재채취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재의 집중개발계획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재의 집중개발계획은 골재가 집중개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업자의 명칭
2. 골재채취구역
3. 월별·분기별 골재채취계획량
4. 골재채취기간
5. 골재의 채취를 위하여 소요되는 시설

· 장비 및 인원

제12조 (골재의 비축) ① 건설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 비축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재비축계획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비축의 목적

2. 지역별 비축계획량

3. 골재종류별 비축계획량

4. 골재의 비축기간 및 방출계획

②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 비축명령을 받은 골재채취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재비축계획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업자의 명칭

2. 골재채취 또는 구매예정구역

3. 비축계획량

4. 비축기간

5. 비축기지

제13조 (기술지도)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기술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한관광진흥공사

2. 한국자원연구소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14조 (골재채취에 대한 지원) ① 법 제

10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말한다.

1. 인조골재의 개발

2. 골재채취현장의 조경기술개발

3. 골재의 비축

4.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②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등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한 경우의 융자금의 이자율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 (골재채취지원업무의 대행)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골재수급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된다.

1. 경제기획원·내무부·국방부·농림수산부·상공부·동력자원부·건설부·교통부·환경처·조달청·산림청 및 수산청의 1급 내지 3급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각 1인
2. 지질 또는 환경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교수직에 있었던 자로서 건설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인이내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대책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수당)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골재채취업의 등록) ①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골재의 종류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 (골재채취업등록증) ① 시·도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골재채취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제21조 (골재채취업등록대장) 시·도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변경되거나 골재채취업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변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3조 (골재채취업자의 양도)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 양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인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양도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양도하고자 하는 골재채취업의 종류
2. 양도예정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의 소재지 및 상호

제24조 (법인합병인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건설부령이 정하는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행정처분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골재채취업자에게 허가된 골재채취량에서 당해 골재채취업자가 이미 채취한 골재량을 뺀 나머지를 채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골재채취허가등)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천 · 해안의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2. 국도 · 지방도 또는 군도(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를 제외한다)의 유지 · 보수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③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는 자체없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의 채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골재채취허가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 지구 및 수역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에서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 경우로서 동 구역등의 유지 ·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3. 자연공원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4.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 및 그 유역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

- 정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이내의 구역으로 한다.
6.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
 7.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
 8. 수산업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육성 수면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수역
 9.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 구역 중 하천구역
 10. 땅 또는 하구둑의 물막이, 둑 또는 배수문으로부터 상·하류 방향으로 1킬로미터이내의 하천구역과 물넓이둑에서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이내의 하천구역
 11. 해면의 방조제 및 배수갑문으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해역과 해안 또는 해안공작물로부터 50미터이내의 해역
 12. 건설부령이 정하는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구역
- ② 제1항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호소는 하천구역·해역 또는 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8조 (허가의 우선)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2이상의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하여야 한다.

1. 긴급재해복구 또는 군사시설용골재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집중개발 및 비축용골재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용골재

4. 기타 일반사업용골재

②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중 허가신청구역의 연접지역에 이미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골재의 수송능력, 투입된 시설·장비에 따른 골재채취능력 및 환경보호대책 능력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은 20일로 한다.

제30조 (채취기간)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그 채취기간을 정하

여야 한다.

1. 하천골재 · 바다골재 및 육상골재 : 5
년이내

2. 산림골재 : 10년이내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골재
채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 (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① 시
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 본문
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
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음 각호의 변경외의 변경을 말한다.

1.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2. 골재채취구역면적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제32조 (복구비 예치의 예외) 법 제29조
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채취구역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
하는 사업예정지로서 복구가 필요없는
경우
2. 골재채취구역의 지형상 복구가 필요
하지 아니하다고 시장 · 군수 또는 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3조 (골재채취의 신고) ① 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신고를 하
여야 하는 경우는 연간 채취하는 골재량
이 1천세제곱미터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
어서 사업계획에 골재채취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기타의 경우에는 매
년 11월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① 건설부
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위치
 2. 단지면적
 3. 골재의 부존량
- ②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
재채취단지가 지정된 때에는 관할 시 ·
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
여야 한다.
1. 제방의 축조 및 보강대책
 2. 분진방지시설물 및 소음방지벽의 설
치등 인접 주거지역에 대한 보건 · 환
경대책
 3. 골재채취단지안의 시설물에 대한 관
리대책

4. 도로개설등의 골재운송대책

제35조 (광업권설정에 관한 협의) 동력자 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된 지역에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해제) ① 건설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골재 부존량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없는 경우
2. 수질오염 기타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 (골재채취허가의 고시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의 허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골재를 채취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

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채취구역의 위치
3. 채취구역의 면적
4. 채취허가량
5. 채취기간
6. 채취구역안의 토지·건축물소유자의 주소·성명 및 토지·건축물의 내용

제38조 (골재채취단지에서의 시설의 설치)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골재의 선별·세척 및 파쇄를 위한 시설

2. 화약고

제39조 (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지도·감독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40조 (과태료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 시·도지사
2. 법 제5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 시

장 · 군수 또는 구청장

③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를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골재채취법이 제정(1991. 12. 14, 법률 제4428호)됨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 및 골재채취의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골재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은 년도별로 지역별·골재의 종류별 조사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되, 골재공급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골재자원개발에 적합한 입지를 갖춘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영 제3조).

나. 시·도지사는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당해 연도에 골재를 채취할 지역을 지정하고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면적, 채취기간등을 고시하도록 함(영 제5조).

- 다. 동력자원부장관은 골재채취업자등에 대하여 골재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에 필요 한 자금외에 인조골재의 개발 및 골재채취현장의 조경기술개발의 자금을 보조 또 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영 제14조제1항).
- 라. 골재채취 장비 및 시설등이 골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채취하는 골재의 종류에 따라 골재채취업에 필요한 자본금 및 시설·장비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특히 바다골재채취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염시설을 갖추도록 함(영 제19조 및 별표 1).
- 마.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보존지구, 상수보호구역과 농지개량시설·지정문화재·군사시설 및 수산자원보전지역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구역에서는 골재채취를 할 수 없도록 함(영 제27조).
- 바. 골재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골재의 부존량, 토지의 이용전망등을 참작하여 하천이나 바다에서는 5년, 산림에서는 10년의 범위내에서 채취기간을 정하도록 함 (영 제30조).
- 사. 건설부장관은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단지의 위치·골재의 부존량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인접주거지역에 대한 보건·환경대책과 단지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 및 골재의 운송대책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영 제34조).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 2백만호 앞당겨진 내집마련